



의안번호

제76호

## 논산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최정숙 의원 외 4명
발의연월일	2020. 6. 15.

# 논산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76호
----------	------

발의연월일 : 2020. 6. 15.

대표발의자 : 최정숙

공동발의자 : 구본선 이계천  
서 원 김남충

## 1. 제안이유

- 어려운 농촌현실에도 농업을 가업으로 여기고 대를 이어 농업에 종사하는 가업승계 농업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농촌인구의 이탈을 막고,
- 농업기술 전수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증대로 행복한 농촌을 실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대상 관한 사항(안 제5조)
-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1) 가업승계농업을 기반으로 한 생산·유통·가공·수출 관련 사업
  - (2) 농촌정착지원을 위한 농업 관련 창업자금
  - (3) 농업경영정보 제공 및 기술 교육 실시
  -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가업승계 농업인지원대상자 신청 및 선정절차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
-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 회수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 조례안

### 논산시 조례 제 호

#### 논산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려운 농촌 현실에도 농업을 기업으로 여기고 대를 이어 농업에 종사하는 가업승계 농업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농촌인구의 이탈을 막고 농업기술 전수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4. “가업승계 농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생업으로 승계하였거나 승계하기 위하여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업승계 농업인을 위한 실효적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가업승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생활터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가업승계 농업인은 농촌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농촌 공동체를 활성화하여 활기차고 행복한 논산시 건설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시장은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논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대상자 선정심의
2.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계획수립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부모(부 또는 모)와 농업에 종사하는 40세 이하의 사람
2. 현재까지 부모(부 또는 모)가 농업에 종사하였고 본인은 농업경력이 1년

이상이면서 40세 이하의 사람

제6조 (지원사업 등) 시장은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가업승계농업을 기반으로 한 생산·유통·가공·수출 관련 사업
2. 농촌정착지원을 위한 농업 관련 창업자금
3. 농업경영정보 제공 및 기술 교육 실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대상자 신청 및 선정절차) ① 가업승계 농업인이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사업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 계획서를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가업승계 농업인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 될 경우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적합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시장은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한 영농교육 등 사후관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회수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가업승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가업승계 농업인이 보조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할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착수 또는 경영하지 아니할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5. 그 밖에 시장이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가업승계 농업인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업승계 농업인이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보조금 집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안자	논산시의회 의원	최정숙 의원 외 4인



[별지 제2호서식]

# 사 업 계 획 서

## 1. 현 황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사업지 :

○ 주 영농형태 : \*경종, 축산, 원예, 과

수, 기타로 기재

영농규모(m <sup>2</sup> )	
농업시설 현황(동/m <sup>2</sup> )	
농기계 현황(대)	

## 2. 사업계획

사업내용

○

세부사업별 소요액

사 업 명	세 부 사 업 내 용	사업량	단가	사업비(천원)
계				
하우스 설치				
축사 개보수				
:				

※ 자부담금 조달계획 :

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 사업추진일정은 ←→으로 표시

□ 기대효과 (신청 사업분야)

(단위 : m<sup>2</sup>, 두, 천원)

작 목 명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성장률 (판매수입 기준)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계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관련법규 발췌

###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과 농촌주민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단체는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농업경영의 효율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소비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가족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 종사자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및 농어촌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가족 노동력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농어가(家族農漁家)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안정과 농어가의 특성에 맞는 규모화, 전문화 및 협동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